(긴급) 대표자 임시 회의 소집 공고

중앙동아리 대표자 여러분들께,

중앙동아리연합회(이하 중동연) 운영위원회 소속 김희현, 유신형, 김희수 등 운영위원 2/3 이상 (총 13인 중 11인)의 요구에 의하여 대표자 임시 회의(긴급)를 5월 8일에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동아리연합회칙 6장 동아리연합회장 및 부동아리연합회장 52조(탄핵)

2. (발의) 운영위원 2/3 이상 또는 중앙동아리 대표자 1/2 이상의 요구로 발의한다.

1. 본 회의의 안건

: 제 35대 중앙동아리연합회장 마지연 탄핵

2. (긴급) 대표자 임시 회의 개최 사유

: 2020년 1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업무 진행에 있어서 수차례 갈등이 발생하였고 간부진은 회 장단과의 방향성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3월 15일, 중동연 간부진과 회장단은 이를 해소하 고자 상호 피드백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 간부진은 회장의 연락 문제, 불성실한 운영 태도, 집행부원 대상 교육부재,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 부회장의 자신없는 태도 등 많은 개선 요청을 드렸고 이러한 점을 고쳐 나갈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부회장은 회의를 녹음하거나 질문을 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이와 달리, 회장은 변함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갈등으로 발전하여 3월 23일자로 시설 팀장이 사퇴하였습니다.

팀장 한 명의 사퇴로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회장의 태도에 회장에게 직접 자진사퇴를 권유했으나, 납득 불가능한 개인적 가치관으로 거절당하였습니다. 또한 회장 측에서 감정적 봉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여 내부 협의 하에 **중동연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중동연 내부를 넘어 중앙동아리 회원분들께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에 대표자 임시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중앙동아리연합회칙 6장 동아리연합회장 및 부동아리연합회장 52조(탄핵)

3. (의결) 본회 학생총회 2/3 이상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 또는 대표자회의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3. 탄핵 사유

1) 운영위원회 정기 회의 미실시(회칙 위반)

중앙동아리연합회칙 5장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40조(구성)

본회 회장, 부회장 및 각 분과위 위원장, 집행위원장 및 집행부로 구성한다

중앙동이리연합회칙 5장 43조(소집)

- 1.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매주 1회이며 집회 3일전에 공고하고 소집한다.
- 2. (임시회의) 본회 회장 또는 본회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최소 하루 전에 공고하고 소집한다.

: 회의는 4개월간 총 2회(3월 4일, 3월 5일) 실시되었으며, 정식적인 안건지나 회의록은 단 한번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2) 집행위원회 전체 회의, 팀장 회의의 소극적인 운영

: 중동연 집행위원회 회의는 1월 17일 처음으로 개최되어, 3월 15일 팀장 회의 전까지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3월 15일 팀장 회의는 팀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최되었고 회장의 태도 변화, 정기회의 운영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집행위원장의 건의에 의해서만 회의가 개최되어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오프라인 회의 개최가 어렵다는 변명은, 회장이 온라인 회의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기에 용인될 수 없습니다.

3) 중동연 운영에 있어 의심되는 회장의 자질

3-1) 중동에 대한 봉사정신 결여

: 중동연은 하나의 학생회로서 학우분들을 위한 봉사 단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속 동아리를 향한 배려와 소통이 밑받침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동아리 측 의견에 필요 이상으로 강경 한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중앙동아리 업무를 중동연이 대신 처리하자는 의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사퇴 권유 당시, 본인도 자질부족을 인지하여 사퇴까지 고려한 적은 있으나 중동연보다도 자기자신이 소중하다는 이유로 권고사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사퇴 권 고를 한 당시 본인의 감정을 앞세워 본인 제외 집행부원의 업무 중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중동연 집행부의 집단적인 탈퇴까지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3-2)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전년도와의 유대감

:0명, 이 숫자는 회장을 제외하고 현재 중동연에 남아있는 34대 중동연 집행위원회의 숫자입니다.

회장은 작년 중동연에서 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기존 집행위원회를 떠나보냈으며, 현재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업무 자료마저 얻을 수 없었던 전년도와의 유대감은 전적으로 회장에게 책임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3-3) 집행위원회와의 소통 의지부족

: 타인이 회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문이나 반대 의견을 냈을 시, 회장은 대답 회피, 무시, 논점을 흐리는 발언 등의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심할 경우, 회장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장에게 의견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 부원들이 많습니다.

3-4) 이해할 수 없는 인사 지정

: 3월 13일, 회장은 경희대학교 소속 학우 한 분을 중동연 자문위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인사권은 회장 고유의 권한이었기에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운영적인 면에서 3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대외비라는 이유로 자문위원의 존재는 일반 집행부원에게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중동연 소속이지만 자문위원의 연락처가 공유되거나 단체 대화방에 초대된 적이 없습니다. 셋째, 탄핵을 앞두고 나서야 중동연에서 작성된 모든 회의록과 단체 대화방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던 자문위원이 공개되었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권한으로 능력 있는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단체를 위한 인사 채용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권력남용이라고 판단됩니다.

5) 기타 사유

: 반복적인 부원들과의 갈등 야기 / 시설팀장 탈퇴 원인 제공 / 공석에 대한 해결책 요구불응 / 지속적인 회의 지각 / 늦은 연락 확인 / 본인 업무 공유의 불성실성 / 갑작스러운 업무 요청 및 진행 / 중앙운영위원회의 불성실한 참여 / 문제점을 지적 받았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음 / 지속적으로 특정 집행부원을 험담한 정황이 있음 / 회의 내용 미숙지

이러한 사유에 따라 지난 4개월간 회장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였고 집행부원에게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 11인은 회칙에 의거하여 '제 35대 중앙동 아리연합회장 마지연의 탄핵'을 발의합니다.

중앙동아리연합회칙 6장 동아리연합회장 및 부동아리연합회장 52조(탄핵)

1. (탄핵사유) 동아리연합회(부)회장이 책임을 방기하거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을 경우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다.

2020년 5월 6일

중앙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부회장, 학술분과장 **김희현**

집행위원장, 사무회계팀장, 체육분과장, 취미교양분과장 **유신형**

콘텐츠기획팀장, 디자인팀장, 사회분과장 **김희수**

종교분과장 **강주영** 시설팀 **정찬주** 시설팀 **김민수**

사무회계팀 이종익 사무회계팀 조민규 사무회계팀 이 현

콘텐츠기획팀 **오지현** 콘텐츠기획팀 **우성현**